

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(危害)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,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이 전부개정(2019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(안 제2조)

- (1)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.
- (2)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.

나.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(안 제3조)

- (1)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(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)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.
- (2)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.

다.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9. 9. 19. ~ 10. 11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2호,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) ①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[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(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

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조(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)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[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(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)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수료) 법 제76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보고)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“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2항”을 “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62조”로 한다.

[별표]

수수료(제4조 관련)

구분	수수료
1.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	<p>가.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</p> <p>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</p> <p>2)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</p> <p>나.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</p>
2.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	<p>가.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: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</p> <p>1) 현장심사 수수료: 심사비용 × 2명 × 심사일</p> <p>2)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: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,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</p> <p>나.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: 4,000원</p>

비고: 제1호가목1) 및 제2호가목1)에 따른 심사비용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 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조사	제조국가명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안전 부품	승강기안전부품명	모델명	
	정격전압/전류 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	모델 구분 (필요시 별지 사용)	
	수량	금액	
	사용장소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2호 및 「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제출서류	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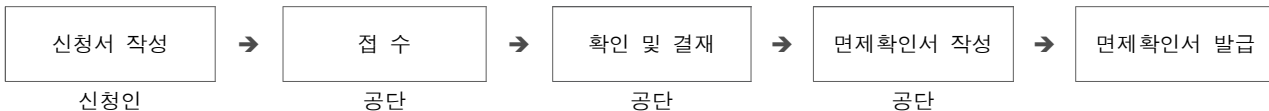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1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2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처리절차



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사	제조국가명	
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	승강기안전부품명	모델명
	정격전압/전류 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	모델 구분
	수량	
	사용 장소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비고

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.

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조사	제조국가명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	승강기의 종류/승강기명	모델명	
	정격전압/전류	모델구분 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	
	수량	금액	
	사용장소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2호 및 「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제출서류	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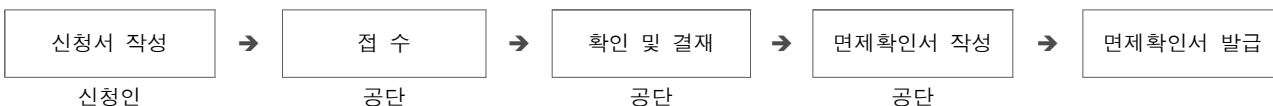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※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처리절차



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사	제조국가명	
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	승강기의 종류/승강기명	모델명
	정격전압/전류	모델 구분 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
	수량	
	사용장소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2호 및 「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비 고

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.

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제정안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이 개정('19. 3. 28. 시행)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

4. 작성자: 건축기획과 이현준 (02-2133-7118)